

의안번호	2200211
의 퇴 인	정희용 의원
회 답 일	2024. 7. 3.
추 계 번호	24B0627

산림 재난방지 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산림청장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34억 100만원(연평균 46억 8,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현재 비용추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기본경비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통합될 3개 기관 중 보조를 받고 있는 임업진흥원을 제외한 한국치산기술협회 및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사업의 수입금으로 자체 충당¹⁾하고 있어, 실제 지원비용은 줄어들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안 제62조) 및 사업(안 제66조제3항)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공단 지원 경비 (A)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10,458	10,798	11,148	11,511	11,874	55,789	11,158
	자산취득비	1,147	—	—	—	—	1,147	229
	기본경비	2,001	2,065	2,130	2,198	2,265	10,659	2,132
	소계	13,606	12,863	13,278	13,709	14,139	67,595	13,519
현행 지원예산(기준선)(B) ¹⁾		8,477	8,655	8,837	9,022	9,203	44,194	8,839
추가재정소요 (C=A-B)		5,129	4,208	4,441	4,687	4,936	23,401	4,680

주 1) 현행 지원예산(기준선)은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에 지원되는 예산

1.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기본경비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통합될 3개 기관(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중 보조를 받고 있는 한국임업진흥원을 제외한 한국치산기술협회 및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사업의 수입금으로 자체 충당 중으로, 실제 재정소요는 줄어들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서 한국치산기술협회('24.2.6. 공공기관 지정)의 최근5년(2019~2023) 손익계산서 상 연평균 1,815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재난 피해의 예측·예방·대비 및 대응·복구·복원하고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1. 산림재난방지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산림재난방지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산림재난방지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교육훈련, 연구 및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5. 산림재난 피해지의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3	안 제8조(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 시·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 시·군·구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10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위험지도)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을 위하여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행하여야 함(제1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등을 반영한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작성하여 지역산불관리기관, 지역산사태관리기관 및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11조(산림재난 정보시스템 구축)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제1항) 1. 산불위험예보,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 등 산불관련 정보 2.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등 산사태 관련 정보 3. 산림병해충의 발생 및 방제 정보 등 산림병해충 관련 정보 4.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정보 그 밖에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6	안 제12조(산림재난 상황실)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산림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제1항) 제2조제7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관할지역의 산림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7	안 제13조(산림재난 대응단)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6조제2항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제39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8	안 제14조(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등)	산림청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제1항)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시·도시행계획, 시·군·구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제2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4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15조(산불 예방 등)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제4항)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에 따라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하 “산불취약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6항)	의무규정
10	안 제17조(산사태 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산사태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1	안 제18조(산사태 예방 등)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산사태 예방·대응·조사·복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사태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산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12	안 제19조(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21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지방산림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함(제1항)	의무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4	안 제23조(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5	안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 등 토지 매수·교환)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6	안 제25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예찰(이하 “예찰”이라 한다)과 산림병해충 방제(이하 “방제”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 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예찰·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7	안 제26조(산림병해충 예방 등)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림병해충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하여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의무/재량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8	안 제27조(예찰)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예찰을 하여야 함(제1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9	안 제34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제33조에 따라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진화를 지휘하고 진화대원에게 진화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20	안 제36조(산불진화단 등 설치)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제1항) 1. 산불의 진화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지휘·통솔 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 보좌 4. 산불진화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5.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음(제2항)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산림사업에 종사하거나 지역의 주민 중에서 산불방지 업무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산불자율진화대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산불자율진화대에 구성된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고 산불방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자율진화대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1	안 제39조(산사태대응팀 설치)	산림청장 및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사태대응팀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제1항) 1.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활동 2.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 구성 및 운영 5. 산사태예방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6. 산사태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현장예방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2	안 제41조(산사태 긴급점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 및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산사태 긴급점검(이하 “긴급점검”이라 한다)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제2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23	안 제43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樹木)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함(제3항) 1. 산림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또는 뿌리 등의 제거 2.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폐, 토석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3. 산림병해충을 옮기거나 피해를 일으키는 곤충 등 동물의 방제나 병해충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식물의 제거 4.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종묘·토양의 소독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제6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4	안 제45조(방제사업 설계·감리)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감리를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6항)	
25	안 제47조(산림병해 충대응팀 등 설치)	산림청장 및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림병해충대응팀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제1항) 1. 예찰 및 방제 활동 2. 예찰·방제 사업의 현장지도 3. 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4. 예찰·방제 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5. 예찰·방제를 위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재량규정
		산림청장 및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신속한 예찰·방제를 위하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2항)	
		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함(제3항)	
26	안 제48조(산불 조사)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모든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현장확인, 감식·감정·실험 등에 관한 조사(이하 “산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7	안 제49조(산불피해 지 복구 등)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피해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8	안 제50조(산불 대응 분석·평가)	산림청장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산불 대응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9	안 제51조(산사태 조사)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피해지에 대하여 산사태 원인과 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30	안 제52조(산사태 발생지 복구)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31	안 제53조(산사태 대응분석·평가)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32	안 제54조(산림병해충 조사)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산림병해충 종류별·지역별·피해도별 산림병해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33	안 제55조(방제효과 조사)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방제효과 검증과 방제방법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제이후에 방제효과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34	안 제56조(산림병해충 대응분석·평가)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림병해충 대응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35	안 제57조(산림재난 방지 기반시설의 설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임도, 사방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36	안 제58조(산악기상 관측망 구축·운영)	산림청장은 산림보호 및 산림재난방지 등을 위하여 산악기상관측시설을 설치하는 등 전국적인 산악기상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7	안 제59조(산림항공기 운용)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산림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함(제1항) 1. 산림재난방지 활동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숲길 이용자의 조난·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 예방과 대응 3. 「산림보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산림오염의 방지·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지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산림사업의 현지확인·조사, 자재 및 인원의 수송 6.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구호 활동 7. 산불진화훈련 또는 헬기의 기능시험·이동·조종기술 훈련 등을 위한 비행 8. 그 밖에 산림행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무규정
38	안 제60조(산림재난방지 교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림재난에 대한 의식을 기르고 필요한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실시하여야 함(제1항) 1.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 2.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기간 등	의무규정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하여야 함(제2항) 1.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2.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 산사태 현장예방단 4.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5.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은 제62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9	안 제61조(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개발사업(이하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산림재난방지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제2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산림재난방지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를 활용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음(제3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전문기관이나 산림재난방지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재난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술·정보 및 교류, 홍보 및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9항)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제10항)	
40	안 제62조(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1	안 제6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제1항) 1.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시행계획 2. 산림재난 조사·예찰·점검 및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연구 3. 산림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4.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훈련 5. 산림재난방지 기술·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6.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7. 산림재난방지 활성화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국내외 산림재난방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9.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에 관한 조사·연구·평가·점검 및 안전진단 10. 산림재난방지와 관련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무규정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42	안 제71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산림재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재량규정
43	안 제73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1. 산림병해충의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2.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3. 산사태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재량규정
44	안 부칙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산림청장은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제1항)	의무규정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봄(제5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	「산림보호법」 등을 근거로 현행 사업 진행 중 — 제정안 시행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를 알 수 없음
2	안 제8조(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	—	
3	안 제10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위험지도)	—	
4	안 제11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	—	
5	안 제12조(산림재난상황실)	—	
6	안 제13조(산림재난대응단)	—	
7	안 제14조(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등)	—	
8	안 제15조(산불 예방 등)	—	
9	안 제17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	—	
10	안 제18조(산사태 예방 등)	—	
11	안 제19조(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	
12	안 제21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	
13	안 제23조(산사태취약지역 관리)	—	
14	안 제25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	
15	안 제26조(산림병해충 예방 등)	—	
16	안 제27조(예찰)	—	
17	안 제34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	
18	안 제36조제1·2·4항(산불진화단 등 설치)	—	
19	안 제39조(산사태대응팀 설치)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0	안 제41조(산사태 긴급점검)	—	「산림보호법」 등을 근거로 현행 사업 진행 중 — 제정안 시행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를 알 수 없음
21	안 제43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	—	
22	안 제45조(방제사업 설계·감리)	—	
23	안 제47조(산림병해충대응팀 등 설치)	—	
24	안 제48조(산불 조사)	—	
25	안 제49조(산불피해지 복구 등)	—	
26	안 제50조(산불 대응평가·분석)	—	
27	안 제51조(산사태 조사)	—	
28	안 제52조(산사태 발생지 복구)	—	
29	안 제53조(산사태 대응분석·평가)	—	
30	안 제54조(산림병해충 조사)	—	
31	안 제55조(방제효과조사)	—	
32	안 제56조(산림병해충 대응분석·평가)	—	
33	안 제57조(산림재난방지기본시설의 설치)	—	
34	안 제58조(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	
35	안 제59조(산림항공기 운용)	—	
36	안 제60조(산림재난방지 교육)	—	
37	안 제71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	
38	안 제73조(포상)	—	
39	안 부칙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	
40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산림재난 피해의 예측·대비 및 복구 등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41	안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 등 토지 매수·교환)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입목·죽 포함)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산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매수예정 지역의 규모, 매수금액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42	안 제36조제3항(산불진화단 등 설치)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산불자율진화대는 대형산불 발생으로 산불이 장기화될 경우 투입할 보조인력으로, 현시점에서는 편성 규모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산림청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산불진화인력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
43	안 제61조(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산림청장이 산림재난방지 전문기관 및 산림재난방지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산림재난방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산림재난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연구개발사업 및 지원예산 규모와 국제협력 지원예산 규모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44	안 제66조제3항(사업)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수입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45	안 제62조(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및 사업(안 제66조제3항)	○	산림청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표 2]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조문	현행 사업 및 예산 내역	2022	2023	2024	비고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안 제7조)	•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은 산림청장에서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한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자체수립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안 제8조)	• 산림재난방지 시·도계획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따라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한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자체수립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위험지도(안 제10조)	(산불) 산불취약지도 ※ 5년마다 작성중	—	165	—	계속사업 (매 5년)
	(산사태)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산사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293	1,294	1,294	계속사업
	(산림병해충) 산림자원정보화 —산림병해충방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예보관리	1,500	1,500	1,500	계속사업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안 제11조)	(산불) —산림재난관제시스템 구축·운영중				
	산림자원정보화	754	754	754	계속사업
	스마트산림재해대응	111	620	620	계속사업
	산림과학원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123	146	176	계속사업
	(산사태)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산사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293	1,294	1,294	계속사업
	(산림병해충) 산림자원정보화 —산림재해통합시스템 내 산림병해충방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중	1,500	1,500	1,500	계속사업
산림재난상황실(안 제12조)	• 현재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중으로 자체 편성 가능				자체운영
산림재난대응단(안 제13조)	• 현행 산림청 소관 일자리 사업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내역사업을 통해 산림재난대응단 통합 구성·운영 가능하여 추가 제정 소요 없음				계속사업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437	74,830	76,614	

조문	현행 사업 및 예산 내역	2022	2023	2024	비고
	-산사태현장예방단	5,226	5,530	5,647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21,845	23,096	23,330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등(안 제14조)	대책본부 운영	1,360	1,480	1,439	계속사업
산불 예방 등 (안 제15조)	• 현행 ‘산림재해 드론 활용’, ‘소화시설 및 운영’, ‘감시기반 확충’, ‘진화장비 확충’,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대응센터’ 등 내역 사업을 통해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 설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 마련,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 확보 가능하여 추가재정소요 없음				계속사업
	산불방지대책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1,331	1,331	1,331	
	-소화시설 및 운영	2,152	2,289	2,289	
	-감시기반 확충	1,887	1,887	1,887	
	-ICT 플랫폼구축	300	600	3,225	
	-진화장비 확충	3,847	10,597	12,457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8,809	20,642	20,486	
	-산불대응센터	6,754	1,858	1,822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437	74,830	76,614	
	-산림헬기도입·운영	82,851	110,804	112,344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안 제17조)	• 산림청 자체 운영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 없음				자체운영
산사태 예방 등 (안 제18조)	• 현행 산사태 관련으로 대응 가능한 사항으로 추가 재정 소요 없음				계속사업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13,320	11,963	25,440	
	사방사업	226,690	221,014	251,019	
	산림재해대책비	50,000	20,000	100,000	
	산사태현장예방단	5,226	5,530	5,647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안 제19조)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예산을 확보하여 조사중으로 추가재정소요 없음				계속사업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	3,384	3,384	6,229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2,835	2,835	4,73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안 제21조)	•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운영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 없음				자체운영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안 제23조)	• 담당 공무원이 산사태취약지역 등 현장을 점검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중[안 제13조와 중복]				계속사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안 제25조)	• 산림청 자체 운영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 없음				자체운영
산림병해충 예방 등 (안 제26조)	• 현행 산림병해충방제 세부사업을 통해 대응중인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 없음				계속사업
	산림 병해충방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64,636	107,767	92,709	
	-일반산림병해충 방제	23,392	23,398	24,648	

조문	현행 사업 및 예산 내역	2022	2023	2024	비고
예찰(안 제27조)	• 현행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및 병해충예찰 및 재발생조사 대응중인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 없음				계속사업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21,845	23,096	23,330	
	－예찰 및 재발생조사	794	794	794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안 제34조)	• 현행 재난상황 관리 내역사업을 통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가능하여 추가재정소요 없음				계속사업
	재난상황 관리	1,961	1,859	1,859	
산불진화단 등 설치(안 제36조제1·2·4항)	• 현행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교육 및 훈련 등의 예산을 통해 산불진화단 설치, 산불방지센터 설치·운영이 가능하므로 추가재정소요 없음				계속사업
	산불방지대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437	74,830	76,614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8,809	20,642	20,486	
	산불교육 및 훈련	997	1,197	1,197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상황실 구축	920	—	—	
산사태대응팀 설치(안 제39조)	• 각 국유림관리소 및 지자체에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산사태대응팀을 구성하며, 산사태현장에방단 선발·운영 중 －총 190개단(국유림관리소 27, 지자체 163) [안 제13조, 제18조]				계속사업
산사태 긴급점검(안 제41조)	• 산사태 긴급점검은 자체 조치 가능한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 없음[안 제13조, 제18조]				자체수행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안 제43조)	• 국가 및 지자체를 통해 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및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중으로 추가재정소요 없음[안 제26조]				계속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64,636	107,767	92,709	
	－일반산림병해충 방제	23,392	23,398	24,648	
방제사업 설계·감리(안 제45조)	• 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및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내용에 설계·감리비 포함되어 있어 추가재정소요 없음 [안 제26조]				계속사업
산림병해충대응팀 등 설치(안 제47조)	• 현행 산림병해충방제과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등을 통해 조치중인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 없음 [안 제13조]				자체수행
산불 조사(안 제48조)	• 현행 산불피해지 조사 내역사업을 통해 산불조사 감식이 가능하므로 추가재정소요 없음				계속사업
	산불방지대책				
	－산불피해지조사	1,000	1,000	1,138	
산불피해지 복구 등(안 제49조)	• 현행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사업을 통해 산불조사 감식이 가능하여 추가 재정 소요 없음				신규사업
	산림복원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	8,556	5,330	
산불 대응평가·분석(안 제50조)	• 별도의 예산 소요 없이 산불 대응 평가·분석이 가능하여 추가재정소요 없음				자체수행
산사태 조사	• 현행 산림재해대책비 세부사업 중 일반연구비(260-01)를 통해				계속사업

조문	현행 사업 및 예산 내역	2022	2023	2024	비고
(안 제51조)	‘산사태원인조사단*’ 용역 실시중으로 추가재정소요 없음 * 산림, 지질 등 산사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산사태 피해현황 및 발생원인 등을 조사				
	산림재해대책비 -산림재해긴급대책비(일반연구비)	500	500	500	
산사태 발생지 복구 (안 제52조)	• 현행 산림재해대책비 사업예산에서 조치중인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 없음				계속사업
	산림재해대책비	50,000	20,000	100,000	
산사태 대응평가분석 (안 제53조)	• 자체 분석 및 현행 산사태원인조사단* 을 통해 실시중으로 추가재정소요 없음 * 산림, 지질 등 산사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산사태 피해현황 및 발생원인 등을 조사				자체수행, 계속사업
	산림재해대책비 -산림재해긴급대책비(일반연구비)	500	500	500	
산림병해충 조사 (안 제54조)	• 현행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및 병해충예찰 및 재발생조사 대응중인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 없음 [안 제27조]				계속사업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21,845	23,096	23,330	
	-예찰 및 재발생조사	794	794	794	
방제효과조사 (안 제55조) 산림병해충 대응평가· 분석(안 제56조)	• 산림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및 평가·분석 가능한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 없음				자체수행
산림재난방지기반시설 의 설치(안 제57조)	• 현행 ‘소화시설 및 운영’, ‘산불진화임도’ 내역사업을 통해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여 추가재정소요 없음				계속사업
	소화시설 및 운영	2,152	2,289	2,289	
	산불진화임도	66,800	75,150	100,200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운영(안 제58조)	• 현행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내역사업으로 추진중인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 없음				계속사업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3,404	2,044	2,044	
산림항공기 운용 (안 제59조)	• 현행 ‘산림헬기 도입·운영’ 내역사업을 통해 산림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 없음				계속사업
	산림헬기 도입·운영	82,851	110,804	112,344	
산림재난방지 교육 (안 제60조)	• 현행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내역사업을 통해 산림재난방지 교육 실시중으로 추가재정소요 없음 [안 제13조, 제18조, 제27조, 제36조, 제39조 등]				자체수행
사상자에 대한 보상 (안 제71조)	•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지침에 따라 정부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추가재정소요 없음 ※ 현행 「산림보호법」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와 동일				필요시

조문	현행 사업 및 예산 내역	2022	2023	2024	비고
포상(안 제73조)	• 산림재난별 세부사업 내 예산으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여 추가 재정소요 없음				계속사업
	산불방지대책 포상금	152	152	152	
	사방사업 포상금	18	18	18	
	소나무재선충 포상금	3	3	3	
공단의 설립준비 (안 부칙 제2조)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위원회(7명 이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산림청 자체 수행 가능				자체수행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및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본 추계에서는 현행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62조의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및 사업) 제정안은 「산림보호법」에 규정된 산림재난방지 체계를 새로운 제정안으로 재정비하면서, 기존 법에서 누락되었던 산사태·산림병해충 예방, 주민 대피명령 제도 등을 추가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을 통해 산림재난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청에 따르면 「사방사업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보호법」에 따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림보호법」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등 3개 기관을 통합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본 추계는 국가가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소요비용에 대해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 (공단 지원경비) 인건비(기관부담금 포함), 자산취득비, 기본경비 지원
 - 설립 초기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현행 산림재난 관련 사업예산을 공단에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위탁사업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공단 사무실은 현 한국치산기술협회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임차료 등 사무실 마련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이때 공단 지원경비(인건비(기관부담금 포함), 자산취득비, 기본경비)에서 향후 공단으로 통합 예정인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지원비용을 차감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
 - 추가재정소요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지원비용(인건비, 자산취득비, 기본경비)
 - 현행 한국임업진흥원 병해충모니터링센터 지원비용
- ※ 한국임업진흥원은 수지차 보전방식 적용기관²⁾으로, 한국임업진흥원 병해충모니터링센터를 흡수하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역시 사업 수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수입이 예상되나, 본 추계에서는 이를 상계하지 않음

- 소비자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및 공공기관 신규채용 기관부담요율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³⁾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은 현행 「산림보호법」에 규정된 산림재난 관련 규정을 이관하고, 산림재난 예방·대응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을 추가하는 것임
 - 총 9장 9절 80개 조문으로 구성
 - ※ [참고자료 1] 「산림보호법」 및 「산림재난방지법안(제정안)」 비교 참고
 - ※ [참고자료 2] 제정안의 신설조문 주요 내용(요약) 참고

2) 예를 들어, 산림청은 2023년에 ‘한국임업진흥원 지원(1542-300)’ 예산으로 수지차 257억 6,400만원(지출 31,312백만원 - 수입 5,548백만원) 지원중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2024.3. 경제전망 기준)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2	2.2	2.1	2.1	2.1	2.0
명목임금상승률	3.4	3.2	3.2	3.2	3.2	3.1
공공기관 신규채용 기관부담 요율 (한국임업진흥원 준용)	11.179	10.831	10.915	11.001	11.089	11.178

□ 산림청은 산림재난(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담당 기관을 통합하여 한국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을 설립할 계획

○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별로 기관·단체가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산림재난 대응 지원이 미흡한 실정

- (산불)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림보호법」 제35조의2)⁴⁾
- (산사태) 한국치산기술협회(「사방사업법」 제22조의2)⁵⁾
- (산림병해충)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산림보호법」 제27조의2)⁶⁾

※ [참고자료 3] 산림재난 관련 협회·기관 현황 참고

○ 산림청은 산림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되는 3개 기관·단체를 통합하여 현장조사, 점검,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일원화된 공공기관을 운영할 계획

- 제정안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내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통합

[표 3]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구성(안)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정원 30명)	한국치산기술협회 (정원 94명)	산림병해충 모니터링 센터 (한국임업진흥원 내 38명)
(예산 '24년 48억원 : 정부지원 0%)	(예산 '24년 234억원 : 정부지원 0%)	(예산 '24년 81억원 : 정부지원 100%)
▶ 산불예방·진화인력교육 ▶ 산불지상진화 훈련 ▶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관리 ▶ 산불피해조사감식 및 연구 ▶ 산불위험지(취약지)조사 ▶ 산불피해지 현장조사 및 복구	▶ 사방 및 임도 관련 기술 개발 ▶ 산사태·땅밀림 조사·연구 ▶ 산지재해 긴급조사·복구 ▶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및 현장점검 ▶ 황폐지 복구지원사업	▶ 소나무재선충병 예비관찰 ▶ 산림병해충 방제 품질 모니터링 ▶ 산림병해충 방제 기술교육 및 홍보 ▶ 나무의사 자격 시험, 수목 진료자격증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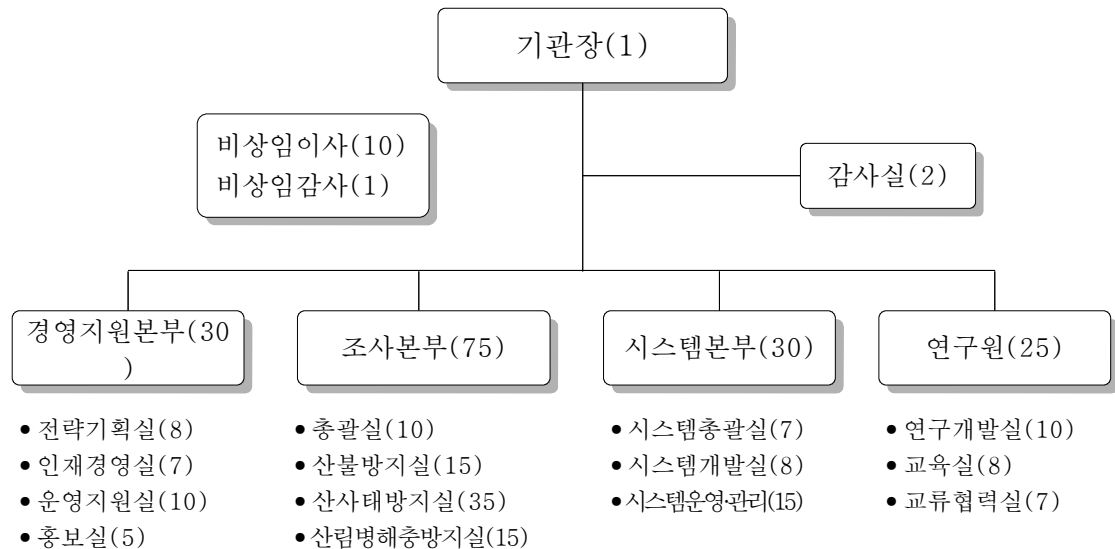
자료: 산림청

- 4) 「산림보호법」 제35조의2(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등) ①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5) 「사방사업법」 제22조의2(한국치산기술협회) ①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산사태·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평가·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 6)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설립근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이나, 「산림보호법」 제27조의2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림보호법」 제27조의2(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신속한 예찰·방제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를 둔다.
(이하 생략)

□ 조직 및 인원

- 조직: 3본부 1연구원 1실로 구성될 예정
- 정원: 163명(상임기관장 1명, 직원 162명)⁷⁾
 - 비상임이사 10명, 비상임감사 1명 별도 운영

[표 4]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조직 구성(안)



주: 괄호 () 안의 숫자는 인원수
자료: 산림청

가.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임직원의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은 2024년 한국임업진흥원⁷⁾ 인건비를 바탕으로 추계

- (상임기관장) 2024년 기준 연봉에 최근 5년(2020~2024년)간 연평균 증가율 2.2% 적용
- (비상임이사) 2024년 기준 지급액 400만원 적용
- (비상임감사) 2024년 기준 지급액 1,600만원 적용
 - 이때 추계기간 동안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지급액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7)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표 5] 한국임업진흥원 임원 연봉 현황: 2020~2024년

(단위: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²⁾	연평균 증가율
상임기관장 ¹⁾		131,445	135,125	136,341	138,250	143,551	2.2%
비상임이사	회의참석수당	1,659	3,245	2,464	2,588	4,000	—
	정액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
	회의참석수당	1,000	3,200	3,200	2,700	4,000	—
	소계	13,000	15,200	15,200	14,700	16,000	—

주: 1) 경영평가 성과급은 포함하지 않음

2) 2020~2023년은 결산, 2024년은 예산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직원 수) 공단 총 직원 수는 162명으로, 정규직(일반정규직) 109명, 정규직(무기계약직) 53명으로 가정
 - 한국임업진흥원의 총 직원 대비 정규직(무기계약직) 평균비율 33% 적용
 - 이때, 추계기간 동안 공단의 총 직원 수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6]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현황: 2020~2024년

(단위: 명)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정규직	일반정규직	156	178	179	179	181	175
	무기계약직	89	91	92	83	83	88
합계		245	269	271	262	264	262
전체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비율							33.5%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직원 평균보수) 2024년 기준 정규직(일반정규직) 및 정규직(무기계약직) 평균보수 적용
 - 이때, 평균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적용⁸⁾

8) 최근 5년간 평균보수의 추이가 고르지 않음을 고려한 것임

[표 7]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평균보수 현황: 2020~2024년

(단위: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¹⁾
정규직	일반정규직	61,340	59,365	59,263	60,254	62,943
	무기계약직	29,696	31,249	31,272	32,992	33,858

주: 1) 2020~2023년은 결산, 2024년은 예산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기관부담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은 상임기관장(1명) 및 직원(162명) 보수에 한국임업진흥원 기관부담금 요율 적용

□ 추계 결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57억 8,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비용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건비	임원	상임기관장		150	153	157	160	164	784
		비상임이사		40	40	40	40	40	200
		비상임감사		16	16	16	16	16	80
		소계(A)		206	209	213	216	220	1,064
	직원	정규직	일반정규직	7,321	7,555	7,797	8,047	8,296	39,016
			무기계약직	1,915	1,976	2,039	2,105	2,170	10,205
		소계(B)		9,236	9,531	9,836	10,152	10,466	49,221
	인건비 소계(C=A+B)			9,442	9,741	10,049	10,367	10,686	50,285
기관부담금(D)			1,017	1,057	1,099	1,143	1,188	5,504	
합계			10,458	10,798	11,148	11,511	11,874	55,789	

주: 1.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통합될 3개 기관(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중 보조를 받고 있는 한국임업진흥원을 제외한 한국치산기술협회 및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사업의 수입금으로 자체 충당 중으로 실제 재정소요는 줄어들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및 한국임업진흥원 경영공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자산취득비

- 공단 정원 163명(기관장 1, 직원 162)명에 대한 PC·사무집기 등 구입비는 2026년 첫해에 1인당 704만원으로 가정
 - 2020년 기준, 공공기관 설립시 1인당 자산취득비 589.2만원⁹⁾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추계 결과, 한국산업재난안전기술공단의 자산취득비는 2026년 첫해에 11억 4,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한국산업재난안전기술공단 자산취득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자산취득비	1,147	—	—	—	—	1,147

주: 자산취득비는 2026년 첫해에 발생

다. 기본경비

- 기본경비는 최근 5년간 한국임업진흥원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평균비율 21.2% 적용

[표 10] 한국임업진흥원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2020~2024년

(단위: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인건비(A)	13,516	14,221	15,204	15,670	15,962	14,915
기본경비(B)	2,917	3,513	3,413	3,378	2,604	3,165
인건비 대비 기본 경비 비율(B/A)	21.6%	24.7%	22.9%	21.5%	16.3%	21.2%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한국산업재난안전기술공단의 기본경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06억 5,900만원으로 추계됨

9)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표 11] 한국산업재난안전기술공단 기본경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본경비	2,001	2,065	2,130	2,198	2,265	10,659

라.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지원예산 현행(기준선)

□ 산림청에 따르면 한국임업진흥원 내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지원예산 현황은 2023년 89억 3,900만원, 2024년 81억 1,600만원 수준

[표 12]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지원예산 현황: 2019~2024년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지원예산	2,643	6,439	7,077	9,122	8,939	8,116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 따라서 추계기간 동안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지원예산이 2024년 기준 규모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이때, 지원예산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13]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지원예산 추계(기준선):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지원예산	8,477	8,655	8,837	9,022	9,203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 추계결과

- (일부추계) 산림청장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34억 100만원(연평균 46억 8,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표 1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안 제62조) 및 사업(안 제66조제3항)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공단 지원 경비 (A)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10,458	10,798	11,148	11,511	11,874	55,789	11,158
	자산취득비	1,147	—	—	—	—	1,147	229
	기본경비	2,001	2,065	2,130	2,198	2,265	10,659	2,132
	소계	13,606	12,863	13,278	13,709	14,139	67,595	13,519
현행 지원예산(기준선)(B) ¹⁾		8,477	8,655	8,837	9,022	9,203	44,194	8,839
추가재정소요 (C=A-B)		5,129	4,208	4,441	4,687	4,936	23,401	4,680

주 1) 현행 지원예산(기준선)은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에 지원되는 예산

1.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기본경비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통합될 3개 기관(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중 보조를 받고 있는 한국임업진흥원을 제외한 한국치산기술협회 및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사업의 수입금으로 자체 충당 중으로, 실제 재정소요는 줄어들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제정안 중 현재 수행 중인 재정사업과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추계액 중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기본경비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

단으로 통합될 3개 기관(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
 입업진흥원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중 보조를 받고 있는 한국입업진
 흥원을 제외한 한국치산기술협회 및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사업의 수
 입금으로 자체 충당 중으로, 실제 재정소요는 줄어들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

[참고자료 1] 「산림보호법」 및 「산림재난방지법안(제정안)」 비교¹⁰⁾

「산림보호법」	비고	「산림재난방지법안」
6장(5절) 66조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부분만 발취)		9장(9절) 80조로 구성 (26개 조문 신설)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산림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책무
제4조 적용범위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6조 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별도 분법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제7조~제19조 산림보호구역 및 입산통제구역 관련 규정		제7조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제8조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
제20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통합정리	제9조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제21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연도별계획	통합정리	제10조 산림재난 위험도평가(신설)
제21조의2 산림병해충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		제11조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
제21조의3 ~ 제21조의14 나무의사 관련 규정	별도 분법	제12조 산림재난상황실(신설)
제22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제13조 산림재난대응단(신설)
제23조 예찰		제3장 산림재난 예방
제24조 방제명령 등		제1절 산불 예방
제25조 산림병해충의 방제		제14조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등
제26조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제15조 산불 예방 등
제27조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해제 등		제16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27조의2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삭제	제2절 산사태 예방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제17조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
제1절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등		제18조 산사태 예방(신설)
제28조 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통합정리	제19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제29조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통합정리	제20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제30조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제21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제31조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제22조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제32조 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		제23조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제2절 산불의 예방과 진화		제24조 산사태취약지역 등 산지 매수·교환
제33조 산불의 예방 등		제3절 산림병해충 예방
제34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25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제35조 산불방지 교육		제26조 산림병해충 예방(신설)
제35조의2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등	삭제	제27조 산림병해충 예찰
제35조의3 협회의 업무	삭제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10) 산림청 제출자료

「산림보호법」	비고	「산림재난방지법안」
제35조의4 회원의 자격	삭제	제1절 산불 진화
제35조의5 협회의 정관	삭제	제28조 산불조심기간 설정 등
제35조의6 협회의 운영 경비	삭제	제29조 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제35조의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삭제	제30조 산불신고 및 보고
제36조 산불 신고 및 보고		제31조 산불대응 단계 발령(신설)
제37조 산불 진화 통합지휘		제32조 대피 및 강제대피(신설)
제38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운영		제33조 산불진화 통합지휘
제39조 협조		제34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제40조 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통합	제35조 협조
제41조 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제36조 산불진화단 등 설치 * 산불자율진화대 신설
제3절 산불피해자의 복구 등		제2절 산사태 대응
제42조 산불 조사		제37조 산사태조심기간 설정 등
제43조 산불피해자의 복구 등		제38조 산사태 신고 및 보고
제44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		제39조 산사태 대응팀 설치
제45조 산불 대응의 평가·분석		제40조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 및 조치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제41조 산사태 긴급점검(신설)
제1절 산사태예방 대책의 수립 등		제3절 산림병해충 대응 등
제45조의2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시행		제42조 산림병해충 신고 및 보고
		제43조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제45조의3 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시행		제44조 방제
제45조의4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제45조 방제사업 설계·감리
제45조의5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46조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해제 등
제45조의6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 경보의 발령 등	조문 분리	제47조 산림병해충대응팀 등 설치(신설)
제2절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제5장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제45조의7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제1절 산불 조사·복구
제45조의8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48조 산불 조사
제45조의9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제49조 산불피해지 복구 등
제45조의10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50조 산불 대응 평가·분석
제45조의11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제2절 산사태 조사·복구
제45조의12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교환		제51조 산사태 조사(신설)
제45조의13 산사태예방 교육		제52조 산사태 발생지 복구
제45조의14 산사태 신고 및 보고		제53조 산사태 대응 평가·분석
제45조의15 산사태대응팀의 설치		제3절 산림병해충 조사
제3절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등		제54조 산림병해충 조사(신설)
제45조의16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제55조 방제효과 조사(신설)
제45조의17 산사태 대응의 평가·분석		제56조 산림병해충 대응 평가·분석(신설)
제45조의18 산사태예방에 대한 문책 요구 등		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제6장 보칙		제57조 산림재난기반시설의 설치(신설)
제47조 산림재해보험 등의 가입		제58조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신설)
제48조 포상		제59조 산림항공기 운용
제48조의3 청문	별도 분법	제60조 산림재난방지 교육
제49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61조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

「산림보호법」	비고	「산림재난방지법안」
제50조 산림항공기의 운용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51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제62조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신설)
제5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3조 정관(신설)
제7장 벌칙		제64조 임원 및 직원(신설)
제53조 벌칙		제65조 임원의 결격사유(신설)
제54조 벌칙		제66조 사업(신설)
		제67조 공단의 운영비(신설)
제54조의2 벌칙	별도 분법	제68조 예산과 결산(신설)
제55조 몰수와 추징	별도 분법	제69조 업무 지도감독(신설)
제56조 양벌규정	별도 분법	제70조 민법의 준용(신설)
제57조 과태료		제8장 보칙
		제71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
		제72조 산림재난보험 등 가입
		제73조 포상
		제74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 등
		제75조 권리·의무 등 승계
		제76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77조 산림재난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제7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 의제(신설)
		제9장 벌칙
		제79조 벌칙
		제80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 장기계획·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연도계획·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방제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참고자료 2] 제정안의 신설조문 주요 내용(요약)¹¹⁾

구 분	주 요 내 용
목적, 정의 등 (안 제1조부터 제2조)	• (목적)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대응 및 복구·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정의) “산림재난”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을 말함
산림재난방지 계획 수립 등(안 제2장)	• (기본·시행계획)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산림재난정보시스템) 산사태정보시스템외 산불 및 병해충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용하여야 하며 산림재난방지 등에 활용하여야 함 • (산림재난상황실) 산림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초동지휘 등을 위해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
산림재난 예방 (안 제3장)	• (산사태 예방)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산사태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림병해충 예방)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하여 산림 및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산림병해충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림재난 대응 등 (안 제4장)	• (산불대응 단계 발령) 산불 진화 자원의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및 지속되는 산불 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불대응 단계를 발령할 수 있음 • (대피 및 강제대피) 산불·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아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음 • (산불자율진화대) 산림사업에 종사하거나 지역의 주민 중 지역 자율적으로 산불방지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운영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안 제5장)	• (산사태 조사) 산사태피해지에 대하여 원인과 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산림병해충 조사 등) 산림병해충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산림병해충 종류별·지역별·피해도별 산림병해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방제효과 조사) 방제효과 검증과 방제방법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방제 이후에 방제효과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산림재난방지 기반 조성 (안 제6장)	• (산림재난기반시설의 설치) 산불진화임도, 다목적 사방댐, 산불소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산림 내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관측하여야 함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안 제7장)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설립 근거, 정관, 임원 및 직원, 임원의 결격사유, 사업, 예산과 결산, 업무 지도감독, 민법의 준용

11) 산림청 제출자료

[참고자료 3] 산림재난 관련 협회·기관 현황¹²⁾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 **설립근거:** 「산림보호법」 제35조의2에 의한 특수법인
- **설립목적:**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 연구·조사, 기술·정보 교류 등의 사업을 통하여 산불방지 기술증진 및 정책개발에 기여
- **연혁**

2014년	12월 29일	창립 총회
2015년	1월 15일	법인설립 허가
2015년	2월 9일	본회 및 8개 지회 출범
2016년	3월 12일	법인 사업자 등록
2018년	12월 31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획재정부)
2020년	4월 3일	산불방지연구소 신설

- **조직:** 본회(경영관리본부, 교육사업본부, 산불방지연구소) 및 8개 지회
- **인원:** 정원 50명(현원30명)
- **주요임무**
 - －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
 - －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 － 산불방지 시설 및 장비 관련 사업
 - － 산불위험지(취약지) 조사
 - － 산불소화시설 대상지 타당성 조사
 - －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 대상지 조사
 - － 산불피해지 현장조사 및 복구
 - － 산불방지 기술·정보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 － 대국민 산불예방 및 홍보
 - － 산불방지 관련 간행물 발간
 - －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 － 기타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산불방지 관련 사업
- **운영재원:** 4,748백만원('24년 기준) ※ **정부지원 비율: 0%**
 - － 집행예산: ('18)2,293→ ('19)2,320→ ('20)2,238→ ('21)2,560백만원
 - ※ 운영재원에는 인건비 및 제반경비 포함

12) 산림청 제출자료

□ 한국치산기술협회

- 설립근거: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의한 특수법인
- 설립목적: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산사태·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평가·진단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에 기여
- 연혁

2008년	11월 24일	발기인대회(서울국유림관리소)
	12월 8일	창립총회(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12월 24일	산림청장 법인설립 허가(특수법인)
2009년	1월 5일	법인설립 등기(본회 및 8개 지부 출범)
2010년	2월 9일	경기지부 출범
	3월 31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획재정부)
2013년	5월 23일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농림분야)
2019년	5월 31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종합업)
2021년	3월 25일	오송 신사옥 준공 및 사옥 이전
	10월 14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명칭 변경
2024년	2월 6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기획재정부)

- 조직: 본회(사무처, 연구조사처, 연구소) 및 8개 지부
- 인원: 정원 94명(현원 94명)
- 주요임무
 - 사방 및 임도 기술·정보에 관한 교류 및 교육·홍보
 - 사방 및 임도 사업 타당성평가 및 사방·임도시설의 점검·진단
 - 산사태·땅밀림 조사, 연구용역 및 시스템 개발·운영
 - 사방 및 임도 사업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긴급하게 필요한 산지재해의 복구 등 지원
 - 복한 황폐지 복구 지원 사업
 -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설 점검
- 운영재원: 23,375백만원('24년 기준) ※ 정부지원 비율: 0%
 - 집행예산: ('18) 7,616→ ('19) 8,712→ ('20) 6,563→ ('21) 9,651백만원
 - ※ 운영재원에는 인건비 및 제반경비 포함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 설립근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의한 준정부기관

- * 「재선충방제법」 제14조의4(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 * 「산림보호법」 제27조의2(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 설립목적: 산림병해충의 신속한 예찰·방제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해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연혁

2012년	1월 26일	개원
2012년	5월 7일	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
2016년	3월 2일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개소
2019년	12월 3일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설치(산림보호법 개정)
2020년	11월 6일	농약 시험연구 기관 지정(농촌진흥청)
2021년	1월 19일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개소

- 조직: 병해충관리실, 재선충병관리실, 방제지원실, 예찰분석실 등 4실 운영

- 인원: 정원 38명

- 주요임무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포함

- 산림병해충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통계관리
 - 산림병해충의 발생추이 분석 및 예측
 - 산림병해충 등의 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
 - 산림병해충 등에 대한 예찰·방제의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사업
 - * 나무의사 자격시험 운영, 수목진료자격증 관리 업무 위탁 수행

- 운영재원: 8,245백만원('24년 기준) ※정부지원 비율: 100%

- 집행예산: ('18) 2,242→ ('19) 2,643→ ('20) 6,439→ ('21) 7,077백만원
→ ('22) 9,122백만원 → ('23) 8,939백만원